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언

판 결 선 고 2025.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케타민 투약

1) 2024.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6. 00:00경부터 00: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C' 클럽 창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4.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9.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시흥시 E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제공

피고인은 2024. 12.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불상량의 코카인을 건네받고, H에게 케타민 약 0.2g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가. 코카인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H는 평소 알고 지내던 코카인 판매책(일명 'I')을 직접 만나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코카인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24. 12. 18.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위 판매책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고 코카인 약 1g을 건네받았고, 2024. 12. 19. 15:00경부터 15:52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J 소재 H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코카인 중 약 0.5g을 건네주고 피고인 으로부터 K를 통해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코카인 사용

1) 2024.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9. 15:00경부터 15:52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J 소재 H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 안에서 위 2의 가향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코카인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2024.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 안에서 위 2의 가향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코카인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3) 2024.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21. 03:40경 대구 중구 N, 'O'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나향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코카인 중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다. 코카인 수수, 소지

피고인은 2024. 12. 2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H에게 케타민 약 0.2g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불상량의 코카인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024. 12. 21.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N, 'O'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코카인 약 0.24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4. 12. 20. 23:30경부터 2024. 12. 21. 00: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P')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54, 59, 61, 62, 68, 74, 77,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및 그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13, 55, 60, 69, 75, 78, 추가 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 산정 금액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0,000원[= 100,000원(2024. 11.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 2회]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50,000원[= 250,000원(2024. 11.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케타민 1g의 소매 가격) × 0.2g]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456,000원[= 600,000원(피고인과 H이 공모하여 2024.

12. 18.경 코카인 1g을 거래한 가격) $\times$ 0.76g(= 피고인이 취급한 코카인 총 1g¹⁾ - 압수된 코카인 0.24g]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200,000원[= 200,000원(2024. 11.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대마카트리지 1회 투약분 가격) $\times$ 1회]

마. 합계: 90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1)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코카인 1g을 매수하여 각각 코카인 0.5g을 나눠가졌고, H은 위와 같이 나눠가진 코카인을 일부 사용한 후 남은 코카인(불상량)을 2024. 12. 20. 피고인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7, 276, 340, 372~373쪽). 따라서 피고인이 취급한 코카인의 총량은 1g(피고인과 H이 공모하여 매수한 코카인의 양)이다.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 내지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회, 기소유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번번이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2. 4. 15. 대마 매매 및 투약, 엑스터시 투약, 대마 및 엑스터시 소지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135, 2021고합1167(병합), 2022고합144(병합)], 2023.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15일(2024. 12. 6.~2024. 12. 21.)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마약류 관련 범행(케타민 3회 투약 및 케타민 0.2g 제공, 코카인 1g 매수, 코카인 3회 사용, 코카인 수수 및 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 1회 흡연)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코카인 매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 및 공범인 H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범행들도 대부분 피고인 자신의 투약, 흡연, 사용에 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범의 존재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범의 체포, 검거가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2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철 _____

 판사 김수철 _____

 판사 이보경 _____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영호(기소), 황금천, 김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진엽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5고합4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 코카인 등 여러 마약류 물질을 투약, 제공, 매수, 소지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마약류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시 마약류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왕해진 _____

 판사 이현석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2-12

판사 박민선 _____